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년 5월 12일 조례 제 589호 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2호 개정 2005년 12월 28일 조례 제 854호 개정 2006년 8월 14일 조례 제 891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89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9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8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7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